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9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박상혁 · 이해식 · 강선우

이연희 • 박홍근 • 홍기원

한준호 · 김주영 · 정진욱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

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도치 않은 드론 불법운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드론안전 확보를 위해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 준을 정할 수 있도록 드론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나.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다.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 라.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 마.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 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 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 바.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안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

사. 「항공사업법」 내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합병·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드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드론산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2. "드론사고"란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드론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드론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 다. 드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드론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라. 드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산피해

- 3. "드론안전위해요인"이란 드론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 4. "드론사용사업자"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5.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군용드론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 드론과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세관용 또는 경찰용 드론과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9조, 제17조, 「항공안전법」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제5조(국가기관등 드론의 적용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계약 등에 의한 임무 대행 사업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행 중 발생한 사고를 제11조에 따라 보고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드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드론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1. 드론 관리정책의 목표 및 전략
 - 2. 드론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 3. 드론의 제작ㆍ정비 및 안전성 관련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 4. 드론 조종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드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드론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 2. 드론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 연구
 - 3. 드론의 안전기술. 운영 · 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 4. 드론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 문인력의 양성
 - 5. 드론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 6. 드론의 사용 촉진 및 보급
 - 7. 드론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 의 구축·운영
 - 8.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드론 안전관리

- 제8조(드론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드론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드론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 및 제124조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1. 드론의 안전성 기준
 - 2. 드론의 통신기술 기준
 - 3. 드론의 무선설비 등을 위한 기준
 - 4. 그 밖에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제9조(무선설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비행환 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드론 제작 또는 정비 등을 하는 자
 - 2. 드론사용사업자
 - 3.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드론소유자등"이라 한다)
 - 4.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 5.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전문교관
 - 6. 그 밖에 드론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4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드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드론안전에 관한 전문가(이하 "드론안전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 2. 이착륙장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 3. 드론 보관장소
- 4. 그 밖의 필요한 장소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 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 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드론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드론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드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 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사고보고) 드론 조종자는 드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드론소유자등이 드론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사고보고 대상 외의 드론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드론안전 자율보고" 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드론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 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드론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항공안전법」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드론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 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 드론소유자등 또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항공안전법」 제57조를 준용한다.

- 제15조(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드론을 드론사용사업에 사용하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드론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의 안전성 관련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관련 인증은 「항공안전법」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24조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고 비행하여야 한다.
- 제17조(드론 비행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의 안전한 운영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비행규칙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 2. 가시권(VLOS) 비행에 관한 규칙
- 3. 비가시권(BVLOS) 비행에 관한 규칙
- 4. 군집비행에 관한 규칙
-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드론 비행규칙을 정하는 경우「항공안전법」 제67조에 따른 항공기 비행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③ 드론조종자 또는 드론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드론 비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종사자 등

- 제18조(무인비행장치 신고) ①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번호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은 해당 무인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비행 시 신고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19조(무인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무인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하는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에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⑥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린 후에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당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 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 락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 1.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2. 관제공역 · 통제공역 · 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1. 야간 비행
- 2.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비행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 제21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②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2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무인비행장치 자격기준 및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해당 무인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무인비행장 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업무(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인비행장치사 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4.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 류등의 영향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5.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 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 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6.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드론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

한 경우

- 8.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9.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무 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준 경우
- 10.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경우
- 11.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 12. 이 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 기간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제23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제24조(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무인비행장치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무인비행 장치 조종연습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외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연습
 -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이하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하며,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종교육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교육훈련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하거나 보고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경우
 -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

- 외)을 받은 경우
- 4. 이 조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교육을 한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

- 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장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

제2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

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36조에 따라 무인비행 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7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인비행장치사용사 업의 등록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 사람
- 3. 이 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28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제29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게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양수)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양수인이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양도인이 제36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 3. 양도인이 제36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 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제31조(법인의 합병) ① 법인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다른 무인 비행장치사용사업자 또는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 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제32조(상속)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은 피 상속인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 이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33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4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폐업)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폐업일 이후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 2. 폐업으로 드론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제35조(서류 등의 비치)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등록증, 보험가입 신고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3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 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 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4.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무인비행장 치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6. 제2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 수한 경우
-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신고서 및 보험가입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37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3.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4.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의 변경
- 2. 무인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3. 무인비행장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 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 제거 및 서 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
- 제38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보칙

-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 3. 제25조제7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1. 이 법에 따른 증명·면허·허가·인가·승인·인증·등록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 2. 이 법에 따른 면허증ㆍ증명서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② 면허·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 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 제43조(무인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 류등의 영향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2.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 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 용한 사람

- 3.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6조에 따른 드론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사람
- 2. 제2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황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 제44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무인비행장치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 2. 제29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
- ② 제37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 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를 제출한 자

- 3. 제16조를 위반하여 드론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4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34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자
- 5. 제35조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서류 등을 갖추어 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제4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준 사람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 나 다른 사람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 하고 조종교육을 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43조제4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④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무인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를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무인비행장치 소유자등
-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
-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및「항공사업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 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2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번호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비행승인을 받은 자는 제2

- 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조종자 증명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으로 본다.
- 제7조(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교육기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 제9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무인 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한 초경 량비행장치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업계획서 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른다.
- 제11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휴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안전법」및 「항공사업법」에 따른다.
- 제1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안전법」 및「항공사업법」에 따른다.
- 제14조(드론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안 전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중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계획은 이 법 제6조에 따른 드론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항공사업법」"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험 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 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비행승인
- 5.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